

소 장

사건번호	
배당순위 번호	
재판부	제 부
주 심	

원 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1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소 가	20,000,100원
첨부할인지액	95,000원
첨부한인지액	95,000원
송 달 료	63,800원
비 고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소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회관
공동대표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정두

2.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3층
대표자 이 종 회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 보 라 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3 신한국빌딩4층
전화 02)535-5533, 팩스 02)3477-7595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위원장 이 계 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2.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별지목록

정보들에 관한 비공개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창설하여 경제적 공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원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창설하여 정보인권 및 정보통신정책 등 정보관련 사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피고의 망중립성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등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들의 망중립성 정책 수립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2.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경위

가. 망중립성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

망중립성 원칙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공공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지속가능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으나, 오늘날 망혼잡 문제나 차세대 망 등에 대한 상업적 망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인 망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들에 있어서 큰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망중립성 정책결정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의견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세계적으로 이견 없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을 결정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10만건 이상의 서면의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코멘트, 소송기록, 워크숍 발언록 등을 모두 별도의 사이트(<http://www.fcc.gov/topic/open-internet>)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 역시 심층 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사용과 관련하여 웹 게시판(<http://dpi.priv.go.ca>)에 논의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갑 제12호증의 1 미국 오픈 인터넷 규칙, 갑 제12호증의 2 번역문) 유럽연합 역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의 시장상황 등에 대한 분석결과 초안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하고 일정시간 동안 이해당사자, 이용자,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전세계적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각국 규제기관들은 투명한 정보결정과정의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역시도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인 사업자,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망중립성 포럼, 무선인터넷전화(mVoIP)전담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나. 망중립성 정책 수립을 위해 피고가 운영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회의들

1) 2011. 5. - 2011. 11. 7차례 열린 망중립성 포럼

피고는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24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망중립성 포럼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서비스 기술

현황, 정책 이슈 및 제도화 방안 논의를 기초로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안) 도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망중립성 포럼 운영계획(안)' 참조) 망중립성 포럼은 2011. 5. - 2011. 11.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 1 망중립성 포럼 논의 진행내용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포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2011년 말에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갑 제3호증 '2011. 12. 26.자 피고 보도자료' 참조),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갑 제13호증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참조)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갑 제13호증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p. xiii 에 의하면 “ 본 연구는 해외정책사례분석, 쟁점 분석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이 연구 보고서가 그 간 논의된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 내용이 상당수 들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중립성 포럼에서 논의되어 도출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만이 정해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선 인터넷 전화 문제 해결등과 관련된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잔존하였습니다.

시 기	내 용	발 표 자
5.26.	망중립성 포럼 키오프 공개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픽관리 및 망중립성 : 정책이슈와 대응방안 - Data Explosion 시대, 미래지향적 NW정책 제언 - 생태계 개방성 확보를 위한 망 중립성 정책의 필요성 	KISDI KT NHN
7.4.	2차세미나	모정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망 트래픽 증가에 따른 ISP 수익성과 망 고도화 -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기술 개요 및 현황 	김영한
7.26.	3차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 Explosion 시대, 망 중립성 및 망 관리 개선 방안 - 트래픽 폭증 해결을 위한 합리적 NW Management 방안 - 일본의 대역제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KT SKT LGU+
8.30.	4차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TV와 망중립성 이슈 - mVoIP와 망중립성 이슈 - 주요국 망중립성 법제화 동향 	KT 등 박재천 KISDI
9.27.	5차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트래픽관리(필요성, 범위, 경제적/기술적 트래픽 관리) -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10.26.	6차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중립성 정책방안 초안 논의 	
11월	망 중립성 정책(안) 발표 및 공개세미나	

표1 망중립성 포럼 논의 진행내용

2) 2011. 4. - 2011. 9. 9차례 열린 무선인터넷전화(mVoIP)전담반

망중립성 이슈 중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반복하여 문제된 이슈는 망사업자가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함부로 차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망사업자들이 자

사의 음성통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무선인터넷 전화를 차단하면서 그 행위는 법적, 경제적, 이용자후생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총 24명을 참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 2012. 2. -2012. 11. 까지 열린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앞에서 본 망중립성 포럼에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학계,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2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망중립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시장분석,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망중립성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만든 이후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기준(안)마련,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 마련, 무선인터넷 전화(mVoIP) 등 신규 서비스, 투자비 분담 등에 관한 정책방향(안) 검토, 기타 사업자 협의체가 제안하는 사항 또는 사업자 건의사항 검토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갑 제4호증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갑 제8호증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2012. 11. 29.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안)”을 만들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중립성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갑 제10호증 ‘2012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 기준(안)은 앞에서 본 가이드라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시기	내용
2월-11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련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7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기준(안) 초안 공개토론회 개최
8월-11월	위 기준(안)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추가수렴 - 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포털, 제조사, 시민단체, 이통사, 케이블업계,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
11월 29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안)” 확정 후 2012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표2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논의 진행 내용

다. 각 회의 운영방법

망중립성 정책은 앞에서 본 것처럼 대다수의 나라들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조절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외적으로는 망중립성 포럼, 무선인터넷전화 전담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를 운영하면서도 그 회의 내용이나, 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그 운영이 모두 종료된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업계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배석을 허용하였음에도, 원고들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회의 배석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망중립성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이 “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앉아서 논의 과정을 볼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구도 모두 거절하면서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는 답변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피고는 2011. 5. 부터 2012. 11.까지 망중립성 정책에 관하여 3개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총 38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단 한 건의 기록물(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 등)도 생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갑 제14호증 “유승희 의원실 2012. 10. 21.자 보도자료” 참조), 최종 결과물로 피고가 제65차 회의에 보고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안)”도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임에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고하여 처리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갑 제15호증 “유승희 의원실 2012. 11. 29.자 보도자료” 참조)

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망중립성 정책결정과정의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그 취합되는 기초자료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2012. 11. 30. 피고에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표3과 같이 그 동안 이루어진 논의과정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 |
|--|
| <p>① 망중립성 포럼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망중립성 전담반과 관련하여 각 운영목적 및 역할, 위원 명단, 회의개최 현황(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일체,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 발간 자료 일체, 세부 예산집행현황</p> <p>② 2012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과 관련된 보고자료 일체 (기준 전문포함)</p> |
|--|

표3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내용(갑 제5호증 정보공개청구신청서 참조)

마. 피고의 정보부분공개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이후 2012. 12. 11. 원고들에게 정보공개법 제 11조 제2항에 의거 연장결정을 통지하였다가 (갑 제6호증, ‘연장결정 통지서’ 참조) 2012. 12. 24.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표4와 같이 일부 정보들을 공개하

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머지 정보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및 처분사유
공개	<p>망 중립성 포럼 및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p> <p>(1) 운영목적 및 역할</p> <p>(2) 위원명단</p> <p>(3) 회의개최현황(일시, 장소)</p> <p>(4) 발간자료</p> <p>(5) 예산집행현황</p> <p>* 관련 공개 자료</p> <p>2011. 5. 15. 공개토론회 자료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p> <p>2011. 12. 5. 공개토론회 자료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p> <p>2012. 7. 13. 공개토론회 자료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p>
비공개	<p>(1) 망 중립성 전담반 관련 제 정보 비공개사유 : 정보부존재</p> <p>(2) 망중립성 포럼 및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각 회의자료 일체 및 2012 년 제 65 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보고자료 일체(기준 전문 포함) 처분근거 :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 비공개사유 : 망 중립성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내부검토과정</p> <p>(3) 망중립성 포럼 및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각 회의록 및 속기록 비공개사유 : 정보부존재</p> <p>(4) 망 중립성 포럼 및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 처분근거 :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비공개사유 : 참석자 명단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p>

표4 피고의 부분결정통지처분 내용(갑 제1호증 “부분공개통지서” 참조)

바. 원고들의 이의 신청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부분결정통지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2012. 1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갑 제16호증 “이의신청서” 참조)

① 망중립성 전담반 관련 자료

- 피고가 망중립성 전담반이 없다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함
- 그러나 망중립성 전담반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전담반, 무선인터넷 전화 전담반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한 바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음
- 정보공개청구시 전담반 명칭을 잘못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점은 상당하지 않음
- 무선인터넷전담반이든, 무선데이터 폭증 전담반이든 망중립성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함

②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회의록, 속기록,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자료의 비공개에 대하여

-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망중립성 정책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함
- 그러나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자료를 공개하는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음
- 오히려 망중립성 관련 정보가 많은 국민들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

로 망중립성 관련 정책을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익에 최대한으로 부합할 수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망중립성 정책 관련 의견수렴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③ 망중립성 포럼 및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

-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하여 참석자 명단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함
- 단순 회의의 참석자 명단은 이미 공개된 성명과 소속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망중립성 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이 요구되고 망중립성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되어야 함

표5 원고들의 이의신청서 내용의 요지

사. 피고의 이 사건 처분(갑 제11호증 “이의신청통지서”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3. 1. 14. “망중립성 전담반 관련 제 정보 중 회의자료 일체와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망중립성 포럼 및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합니다)

1. 망중립성 포럼 및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 회의자료 일체

-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 (별지목록 1의 가.)

방통위는 망중립성 포럼 회의록 및 속기록을 별도로 작성한 바 없어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부존재)

- 회의자료 (별지목록 1의 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3
신한국빌딩 4층

☞ 법무법인 나눔

전 화 : (02)3477-0021(대표)
F A X : (02)3477-7595

변호사 정범성·이경룡·오준화·김성·강정삼·조석만·김보라미·최영섭·김병조·부종식·임영근·최재호·전대일·김성도

망중립성 포럼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중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관련된 자료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가 참고로 제시한 자료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향후 망중립성 정책 방안에 대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려울 수 있고, 사업자가 논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기피함으로써 정책 당국이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트래픽 기준안 관련 2012년 제65차 위원회 회의 보고자료 일체 (별지 목록 2)

현재 망 중립성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망중립성 전담반(mVoIP 전담반) 관련 (2011년 운영)

-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

방통위는 mVoIP 전담반 회의록 및 속기록을 별도로 작성한 바 없어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부존재)

- 회의자료 : 별첨 (별지목록 3)

MVoIP 전담반 회의 자료 중 mVoIP 정책 방향에 관련된 자료는 현재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사업자가 참고로 제시한 자료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향후 망중립성 정책 방안에 대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려울 수 있고, 사업자가 논의를 위한 자료제출을 기피함으로써 정책당국이 시장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 분류

이 사건 별지목록 정보공개청구대상청구내용을 쟁점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보내용	주요쟁점
제1정보	별지 목록 1의 가 (회의록 및 속기록)	정보의 보유, 관리 여부
제2정보	별지목록 2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자료)	비공개정보해당여부
제3정보	별지 목록 1의 나, 3 (회의자료)	비공개정보 해당여부

4. 제1정보(별지목록 1의 가)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제1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한 바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 이 사건 회의들은 모두 회의록 및 속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망중립성 포럼 및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록 및 속기록은 모두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이 작성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 전용회의 진술서 참조) 망중립성 포럼 및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속적으로 주제들이 연결되어 지난 회의요약을 회의 시작 전에 보고한 뒤 진행하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에도 피고가 제1정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망중립성 포럼의 회의 내용으로 피고는 2011년 말에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갑 제3호증 ‘망중립성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참조),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상 망중립성 정책방안연구 보고서”(갑 제13호증 참조)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회의록 및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상 망중립성 정책방안연구 보고서”에서는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 내용을 근거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내용을 통하여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 12854 판결)이라고 하고 있어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당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였음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및 회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진행된 연구결과보고서 및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이상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행정기관이 회의록 또는 속기록을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가이드라인과 보고서를 만들 당시 사용된 것이 회의록 및 속기록임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가이드라인과 보고서를 만들 당시 위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자료 중 활용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문서송부촉탁하거나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인카메라심리를 통하여 문서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다. 소결어

제1정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의록과 속기록이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위원의 진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망중립성과 관련된 중요 정책 가이드라인과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졌음을 고려하였을 때 아무런 기록도 없이 머릿속의 기억만으로 주먹구구로 이러한 결과물들

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시어 위 정보들의 공개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정보(별지 목록 2)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지속적인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는 내부검토가 끝난 이후 정리된 최종안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나. 소위 “트래픽기준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되기까지의 과정

소위 트래픽 기준안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또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등으로 혼용되어서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트래픽 관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갑 제9호증 “통신망의 합리적 기준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참조) 아래에서는 소위 “트래픽 기준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된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사회적 해악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1. 12. 26. 망중립성 포럼에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2) 2012. 2. - 2012. 11. 망중립성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 2011. 12. 26. 자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트래픽관리에 관한 세부적 내용 논의
- 3) 2012. 7. 13.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공개토론회 개최

- 4) 2012. 11. 2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보고하였으나 의견수렴부족을 보류됨

다. 소위 “트래픽기준안”의 내용 및 논란

소위 “트래픽 기준안”은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고 망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갑 제9호증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참조) 그 내용과 구성이 규제기관 내외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위 망중립성 정책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당시부터 원고들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원고들의 참여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2012. 7. 13.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때에도 그 전날까지 토론회 자료를 전혀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고 토론회 참석자들과 일부 기자들에게만 하드카피로 자료를 제공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하드카피로 제공된 자료를 일일이 워드로 작성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사무관은 원고들에게 문자로 해당 온라인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제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2012. 7. 13. 토론회에서 해당 자료는 모두 공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날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트래픽기준안에는 비공개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그 내용을 보더라도 명확합니다.(갑 제9호증 참조)

위와 같이 논의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지면서 소위 트래픽 관리안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2012. 7. 13. 피고가 진행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유

지될 수 없는 몇몇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공개로 진행된 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자문위원회위원들 조차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갑 제17호증 “방통위 트래픽 관리안, 통신감청 허용 논란”, 갑 제18호증 “N스크린이 위험하다. 통신사 임의차단 가능”, 갑 제19호증 “이통사 카톡 무료통화 차단 가능, 카카오, 포털 당황” 각 뉴스 기사 참조)

당초 2012. 7. 13. 공개토론회를 거쳐 트래픽 관리안을 확정하려던 피고는 통신사에게 편향적인 내용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자 이후 몇 차례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논의 끝에 수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최종안을 확정 후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2012. 11. 29. 제 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미루어볼 때 위 회의에 보고한 보고자료는 2012. 7. 13. 공개토론회에 공개된 내용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건전한 비판을 피하고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유승희 의원실은 위 회의가 열린 당일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 관리 기준 제정 중단하라”이라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갑 제15호증 참조)

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이 정보는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7. 12. 제2정보의 초안에 해당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갑 제9호증 참조) 이 제2정보는 위 공개토론회에서 이미 공개된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2012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것이므로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내부논의를 마친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정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법원도 이미 의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2946 판결 참조)

2) 피고 스스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고를 보류 하였습니다.

피고가 공개한 2012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에서 피고 스스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보류하였으므로 (갑 제10호증 '2012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참조), 이 초안을 2012. 7. 12. 공개토론회와 유사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일반 이용자를 포함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정보라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이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혹 이 정보가 내부논의중인 정보라 하더라도 이 정보를 공개한다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2012. 7. 12. 비공개로 논의된 트래픽 관리안을 공개되면서 미처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은 조항들을 재검토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이 트래픽 관리안의 초안이 공개토론회에서 공개되었던 이상 수정안을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트래픽 관리안을 공개할 때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거의 없는 반면에 국민의 알권리와 업무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공적 정보는 특별히 발생할 해악을 정보 보유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제2정보는 향후 사업자에게 행위규범으

로 활용될 법령과 유사한 정보로 일반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에 준하여 그 논의 과정과 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해악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기준을 사회적 공론화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논의과정의 정보도 아닌 결론에 해당하는 제2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마. 소결어

제2정보는 내부논의중인 정보가 아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이미 2012. 7. 12. 공개토론회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었고, 망중립성 정책의 중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기준이므로 법령의 제·개정에 준하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 2정보는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닌바, 이에 대한 공개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6. 제3정보(별지목록 1의나, 3)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관련된 자료들, “mVoIP 정책방향”에 관련된 자료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
- ② 회의진행과정에서 사업자가 참고로 제시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향후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려울 수 있고 사업자가 논의를 위한 자료 제출을 기피함으로써 정책 당국이 시장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의 근거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아래에서 이 점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내부검토평정에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해당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mVoIP 전달반은 모두 그 역할을 다 하여 업무가 종료 되었으므로 위 제3정보는 내부논의과정 중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된 회의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법원은 설혹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해악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2) 별지목록 1의 나 정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소위 트래픽관리안의 최종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한 상황이므로 역시 이 정보 역시 내부검토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의사가 결정된 이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에 망중립성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이동통신사 측에서 제공한 분기별 무선트래픽 총량이 전부였다고 제시하여 의혹을 증폭시키고 피고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바(갑 제14호증 “유승희 의원실 2012. 10. 21. 자 보도자료” 참조), 오히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알권리의 측면에서 소위 트래픽 관리안을 어떻게 만든 것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즉,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망중립성 정책의 공론화가 촉진된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들은 모두 망중립성 정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도 이용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들은 선별적으로만 참여시켜 원고들과 같이 망중립성 정책에 의견개진을 원하는 단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충분히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이익은 훨씬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 역시 공개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3) 별지목록 3 정보에 대하여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는 망중립성 정책에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로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를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사실여부를 가리는 공개토론회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무선인터넷전화(mVoIP)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번 대선 때에서도 중요 ICT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져 사회적 토론

이 이루어지기도 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선인터넷전화(mVoIP)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주제에 대한 논의는 영업비밀도 아니고 사생활비밀도 아니고 우리사회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 자료 역시 모두 공개되어 어떠한 근거를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을 하였는지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21843 판결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는 유선전화보다도 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서비스이자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며 음성통신서비스가 띠는 사회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그 정책과 관련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이 아닌 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회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통신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규제당국이 어떠한 정보와 논의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부논의과정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이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자와 규제기관과의 결탁의 부작용, 피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것에 반하여, 이 사건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경우 발생할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참여권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국정운영의 효율성 등 셀 수 없이 많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비공개이유 역시 없다 할 것인 바, 피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도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4) 소결어

위와 같이 위 정보들을 논의하던 회의들은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도 종료되었는데, 피고가 위 정보들을 내부 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에 반하는 이유제시라 하겠습니다. 다만 정보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판부에서 관련자료들을 열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라는 이유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라는 이유는 정보공개법상 법정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선고)

특히 영업비밀도 아닌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논의가 위축된다는 것은 우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정책을 논의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다수의 공개토론회에 참여하여 논의과정에서 스스로 정보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려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의들에는 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 앞에서도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의 우려는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망중립성 정책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도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소비자권리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사업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정보 비대칭상황은 사업자에 의하여 망중립성 정책이 오도될 수 있는

심각한 공익의 해악이 있다 하겠습니다. (갑 제20호증 “2011년 유럽의회 발
행보고서” 참조)

7. 결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제1정보는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입증을 하였으며, 제2정보, 제3정보는 논의 중이던 회의가 모두 종료되어 의사가 결정되어 최종안이 나온 상황이므로 관련 정보들을 내부논의과정에 있는 정보로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예상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한바 모두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호증	이름 (표목)	원본 사본	작성 자	입증취지	작성 일자
갑 제1호증	부분공 개통지 서	사본	피고	피고의 부분공개통지내용	2012. 12.24.
갑 제2호증	망중립 성 포럼 운영계 획(안)	사본	피고	망중립성 포럼에서 논의한 내 용	미상
갑 제3호증	2011. 12. 26. 자 피고 보도자 료	사본	피고	망중립성 포럼에서 논의한 내 용에 따라 만들어진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 한 가이드라인 내용	2011. 12.26.
갑 제4호증	망중립 성 정책 자문 위 원회 운 영계획	사본	피고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운영 계획	2012. 2.15.

갑 제5호증	정보공 개청구 신청서	사본	원고	정보공개청구내역	2012. 11.30.
갑 제6호증	연장결 정통지 서	사본	피고	피고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연장한 사실	2012. 12.11.
갑 제7호증	전응휘 진술서	원본	전응 휘	각 회의들에서 회의록을 피고 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사실	2013. 3.8.
갑 제8호증	2012년 방송통 신위원 회 업무 계획	사본	피고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운영 계획	2011. 11.29.
갑 제9호증	통신망 의 합리 적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기준 (안)	사본	정보 통신 정책 연구 원 나 성현	피고가 공개토론회에서 제시 한 기준안	2012. 7.13.
갑 제10호증	2012년 제65차 방송통 신위원 회 회의 록	사본	피고	피고가 '의견수렴부족'을 이유 로 트래픽기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사실	2012. 11.29.
갑 제11호증	이의신 청 통지 서	사본	피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내용	2013. 1.14.
갑 제12호증의	미국 오 픈인터 넷 규칙	사본	미국 FCC	미국에서 만들어진 망중립성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과 내용	2010. 12. 21.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2 호증의 1 번역 문	사본		상동	
갑 제13호증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 망 중립 성 정책 방안 연	사본	피고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 내용을 근거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 인,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 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2011. 12.

	구보고서				
갑 제14호증	유승희 의원실 2012. 10. 21. 자 보도 자료	사본	유승 희 의 원 실	2011. 5. 부터 2012. 11.까지 망중립성 정책에 관하여 3개 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총 38 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단 한건의 기록물(회의록, 속기 록, 결과보고서 등)도 생산하 지 않았다는 사실	2012. 10.21.
갑 제15호증	유승희 의원실 2012. 11. 29. 자 보도 자료	사본	상동	최종 결과물로 피고가 제65차 회의에 보고한 “통신망의 합 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 리에 관한 기준(안)”도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임에도 공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고하 여 처리하려고 시도한 사실	2012. 11.29.
갑 제16호증	이의신 청서	사본	원고	원고들의 이의신청내용	
갑 제17호증	방통위 트래픽 관리안 통신감 청 허용 논란	사본	미디 어 오 늘 최 훈길 기자	2012. 7. 13. 피고가 진행한 공개토론회에서 트래픽 관리 안의 내용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매우 달랐다는 사실	2012. 7. 18.
갑 제18호증	N스크린 이 위험 하다. 통 신사 임 의차단 가능	사본	이데 일리 김정 민 기 자	2012. 7. 13. 피고가 진행한 공개토론회에서 트래픽 관리 안의 내용중 논란이 된 부분	2012. 7. 16.
갑 제19호증	이통사 카톡 무 료통화 차단 가 능, 카카 오, 포털 당황	사본	아이 티 데 일리 김민 숙 기 자	2012. 7. 13. 피고가 진행한 공개토론회에서 트래픽 관리 안의 내용중 논란이 된 부분	2012. 7. 13.
갑 제20호증	2011년 유럽의 회 발행 보고서	사본	유럽 의회	망중립성 정책이 일반 이용자 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소비자권리의 침해에 직접적 으로 연관되는 것임을 설명	2011.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3
신한국빌딩 4층

법무법인 나눔

전화 : (02)3477-0021(대표)
FAX : (02)3477-7595

변호사 정범성·이경룡·오준화·김성·강정삼·조석만·김보라미·최영섭·김병조·부종식·임영근·최재호·전대일·김성도

첨 부 서 류

- | | |
|----------------------|----|
| 1. 위 각 입증방법 | 1부 |
| 1. 소장 부분 | 1부 |
|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 1부 |
| 1. 납부서 | 1부 |

2013. 4. 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 보 라 미

서울행정법원

귀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3
신한국빌딩 4층

 **법무법인 나눔**

전 화 : (02)3477-0021(대표)
F A X : (02)3477-7595

변호사 정범성·이경통·오준화·김성·강정삼·조석만·김보라미·최영섭·김병조·부종식·임영근·최재호·전대일·김성도

별 지 목 록

1. 망중립성 포럼 및 정책 자문위원회 관련

가. 회의록 및 속기록 일체

나. 회의자료

2. 트래픽 기준안 관련 2012년 제65차 위원회 회의 보고자료 일체

3. 망중립성 전담반(mVoIP 전담반) 관련 (2011년 운영)

회의자료 일체

끝.